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토 의견]

이 동의안은 2002년 4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정부가 이 협정을 비준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임. 이 협정은 전문 및 8개조의 본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협정의 지위 및 체결배경

가. 협정의 지위

이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¹⁾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²⁾의 하위 협정으로서,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 보안조치, 시설의 반환, 정비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체결배경 및 비준동의사유

미합중국은 탈냉전 이후 비대칭 위협의 증가 등 21세기 안보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성을 추진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지방호 및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2000년 3월 30일 최초로 우리측에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월 28일 주한미군기지 재편성 계획을 구체화한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Land Partnership Plan Information Briefing)³⁾을 우리측에 제시하였음(참고자료 11 참조).

우리로서도 경제발전으로 급격한 도시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미군기지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를 가져와 미군기지 주변에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미군기지 및 훈련장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생겼음.(참고자료 5, 6 참조).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개개의 시설과 구역을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 위해서는 합동위원회를⁴⁾ 통하여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주한미군지위협정제2조제1항), 이 협정 이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시설 및 구역을 조정해 왔음. 그러나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향후 10년간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 바,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되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2. 주요내용별 분석

가. 총규모의 변동

현재 총 7,440만평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이 협정의 이행이 완료되는 2011년⁵⁾에는 57개의 기지 및 시설, 훈련장이 31개로 통폐합되어 약 3,480만평으로 감소하게 됨. 즉, 28개의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6개 3,900만평 등 총 4,114만평을 반환받는 대신에 154만평의 토지와 9개의 대체시설을 공여하고 일부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측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표 1> 공여지 규모 변동(단위 : 만평)

구 분	LPP 이전	LPP 이후
기지 및 시설	2,273(43)	2,059(23)
훈 련 장	5,167(14)	1,267(8)
합 계	7,440(57)	3,480(31)

1)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으로서 1953년 10월 1일 서명되었음.
 2)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 의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명되어 두 차례(1991년, 2001년) 개정되었음.
 3) 2000년 11월 28일 우리측의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과 미국측의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소위 ‘2+2’ 회의에서 제시하였음.
 4) SOFA 합동위원장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부사령관이며, 시설 및 구역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시설분과위원회에 과제형식으로 부여하여 처리함.
 5) 이 협정의 이행완료를 위한 목표시한이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는 기지 및 시설, 훈련장의 숫자, 자료제공 : 국방부

나. 기지 및 시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43개의 기지 및 시설 2,273만평 가운데 28개가 폐쇄되거나 일부 반환되어 총 214만평이 반환될 예정임. 이 반환규모는 미국측이 2000년 11월 28일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Land Partnership Plan Information Briefing)⁶⁾을 통하여 우리측에 반환이 가능한 면적으로 제시하였던 93만평보다 훨씬 많은 규모이고⁷⁾, 춘천의 '캠프 페이지'(Camp Page)나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등 도심에 위치하였던 기지 및 시설을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의 도시발전계획이나 민원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환받을 기지 및 시설 214만평 중 약 40만평은 사유지이므로 그 동안 재산을 행사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표 2 참조).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1년 2월 2일의 우리측 'LPP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에 '공여목적 상실'이나 '미사용'으로 분류된 4개의 기지 가운데,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의 채석장 등이 반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음(참고자료 10 참조).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새로이 미군기지가 이전할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⁸⁾, 이러한 절차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참고자료 6 참조).

한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1990년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에 합의한 바 있었던 미군용산기지(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계획은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적어도 2011년말까지는 그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 훈련장

이 협정으로 현재 5,167만평에 달하는 14개의 미군 훈련장 가운데 약 3,900만평에 달하는 6개 훈련장이 반환됨으로써 75%가 감축되어 8개 훈련장의 1,267만평이 남겨질 예정임⁹⁾.

이와 같은 대규모 반환은 그 동안 미군의 훈련장 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던 훈련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도시발전계획 등의 장애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되며, 특히 반환받을 훈련장 3,900만평의 92%에 해당하는 약 3,600만평이 사유지이므로 그 동안 재산을 행사할 수 없었던 소유권자들의 권리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표 2> 반환 기지 및 시설, 훈련장의 소유권별 현황(단위 : 평)

소유자별	국방부	타 부처	사유지	계
기지,시설	1,470,000	269,100	404,200	2,143,300
훈련장	2,668,000	536,000	36,032,000	39,236,000
합계	4,138,000	805,100	36,436,200	41,379,300

※ 자료제공 : 국방부

반면, 현재 미군에 공여된 지역 중 미 반환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민들은 상대적 상실감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인 바, 이로 인해 많은 반발과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특히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Dagmanos)훈련장' 및 '스

6) 2000년 11월 28일 우리측의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과 미국측의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소위 '2+2' 회의에서 제시하였음.
 7) 미국측이 반환가능한 기지로 제시하였던 93만 2,200평에서 토지공여요구면적(존재하지 않는 군산 간척지는 제외) 75만 600평을 除한 순반환면적은 18만평임.
 8) 예컨대, 춘천의 캠프페이지가 이천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9) 포항의 '무적훈련장' 10만평은 새로 공여될 예정임.

토리(Story)사격장' 등이 제외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참고자료 14 참조).

한편, 2001년 11월 13일 39인의 국회의원들이¹⁰⁾ 발의(대표발의자 : 문희상의원)한 '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안'에 따르면, 미합중국에 시설 및 구역을 추가로 공여할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안

제20조(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요청) ①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 및 구역을 추가로 공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합중국 군대의 시설이 설치된 구역과 공여된 시설 및 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하는 시설 및 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안전지역권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새로이 안전지역권(safety easement) 으로 설정될 곳은 7개 지역, 약 90만 평 정도이며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구조물 건설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안전지역권 설정지역에 대하여 탄약저장소에 인접한 주택 및 건축물의 이주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미군에 공여할 것으로 파악됨¹¹⁾. 그러나 군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얻는 안보라는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지역권 설정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들 지역을 매입하는 등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반환예정지역 환경오염의 치유

이 협정은 우리측에 반환되어질 시설과 구역의 환경오염치유에 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7항).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제1항은 미군이 반환할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1월 18일의 '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에 의하여 반환예정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군측에 책임있는 환경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치유를 요구해야 할 것임.

바. 소요비용의 분담 및 재원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소요되는 경비는 총 3조 3,000억원(약 25억미불)으로 추정되며, 우리측은 총 소요비용의 약 45%에 해당하는 1조 4,9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바, 9개 기지의 대체시설을 공여하는데 1조 2,125억원, 새로이 공여할 토지의 매입에 2,7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3 > 신규공여를 위한 부지매입 규모 및 경비

10) 이 법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발의자 39인중 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의원은 김용갑, 김원기, 유재건, 조용규, 추미애, 한화갑 의원 등 6인임.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는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지역	부지매수	규모(만평)	년도	예산(억원)
소 계				2,775
오 산	공군기지주변	50	'02~11	412
평 택	캠프험프리	24	'05	208
이 천	항작사지역	20	'07	452
의정부	캠프스탠리	2.0	'03	85
포 항	무적훈련장	1.0	'03	127
칠 곡	물품취급운영소	2.5	'03	24
인 천	우편터미널	0.2	'02~11	9
부 산	녹산	17	'08	429
훈련장 부지		40		360
사유지/안전지역				465

※ 자료제공 : 국방부

그런데 대체시설 제공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그 재원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우리측에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공여목적 상실'이나 '공여목적외 사용'으로 판명되었던 대구의 '캠프 워커'(Camp Walker) 일부 및 동두천의 'H-220헬기장' 등과, 미군측이 먼저 반환이 가능한 기지로 제시하였던 동두천의 '캠프 님블'(Camp Nimble)과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Camp Falling Water) 등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됨(참고자료 10, 11 참조).

<표 4> 대체시설 공여계획 및 소요예산(단위 : 억원)

지역	대체대상	이전예정지	공여년도	소요예산
합 계				12,125
동두천	H-220헬기장	캠프스탠리	'08	551
	캠프님블	캠프케이시	'11	1,082
의정부	캠프홀링워터	스탠리	'10	289
	교도소이전	캠프하우즈	'08	1,000
인 천	캠프마켓	험프리/용산	'08	1,259
서 울	캠프 킴	용산기지	'05	298
춘 천	캠프페이지	이천 공작사	'11	4,250
부 산	캠프하야리야	녹산	'11	3,315
대 구	워커헬기장	분산	'07	81

※ 자료제공 : 국방부

또한 정부는 이러한 소요비용의 분담을 위한 재원을 국방예산의 추가부담없이 미군측으로부터 반환 받는 토지를 매각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미군에 공여되어 있는 기지는 미군이 새로운 기지로 이전한 이후에나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제3조제6항 참조), 매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수입시점과 계획이행에 필요한 소요시점과의 차이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재원조달에 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5> 연도별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 (단위 : 억원)

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입	329	485	553	553	1,433	1,141	2,500	2,484	2,010	2,010	1,623
지출	29	393	300	320	1,404	2,362	2,793	2,579	2,730	1,683	315
차액	300	102	253	232	-28	-1,221	-293	-95	-720	326	1318
누계	300	402	655	887	859	-362	-655	-750	-1,470	-1,144	174

※자료제공 : 국방부

3. 종합의견

이 협정은 21세기 안보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성을 추진

하는 미국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는 미군기지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여 추진된 것임.

이 협정의 이행이 완료되게 되면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기지 및 시설, 훈련장 등 4,114만평이 우리측에 반환되어질 예정인 바, 그 중에서도 춘천의 ‘캠프 페이지’(Camp Page)나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등이 반환됨으로써 도시발전의 장애가 해소되어지고 그 동안 공여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3,640만평의 사유지 소유권자들은 재산권행사의 기회를 되찾게 될 것임.

다만, 공여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당연히 우리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 기지내 채석장 등 일부 지역이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본래 공여목적이 상실되어 이번 반환대상에 포함된 대구 ‘캠프 워커’(Camp Walker) 일부 등의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것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으며, 새로이 미군에 공여될 기지 및 시설, 안전지역권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로 인해 이행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우려됨.

또한 이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는 재원조달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인바, 반환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출소요를 충당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그 매각대금의 수입시점과 예산소요시점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자료제공 : 국방부)

- 1. 관련 조약의 내용 15
- 2. 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 18
- 3. 반환 및 이전지역 위치도 19
- 4. LPP사업 수입·지출 추계 20
- 5.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21
- 6. 최근 5년간 주요 민원현황 22
- 7. 반환예정지의 소유권별 현황 26
- 8. 반환예정지의 매도예정가와 대체시설 소요 28
- 9. 안전지역권 설정계획 현황 29
- 10. 한국측 LPP 기본계획안 30
- 11. 미국측의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 내용 31
- 12.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 일지 32
- 13. 반환 기지 및 시설(부속서 1)의 이전 예정지역 33
- 14. 매향리사격장·다그마노스훈련장·스토리사격장 민원내용 ---- 34

<참고자료 1>

관련 조약의 내용

가. 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나. SOFA협정

제2조(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발생 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만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통신당국 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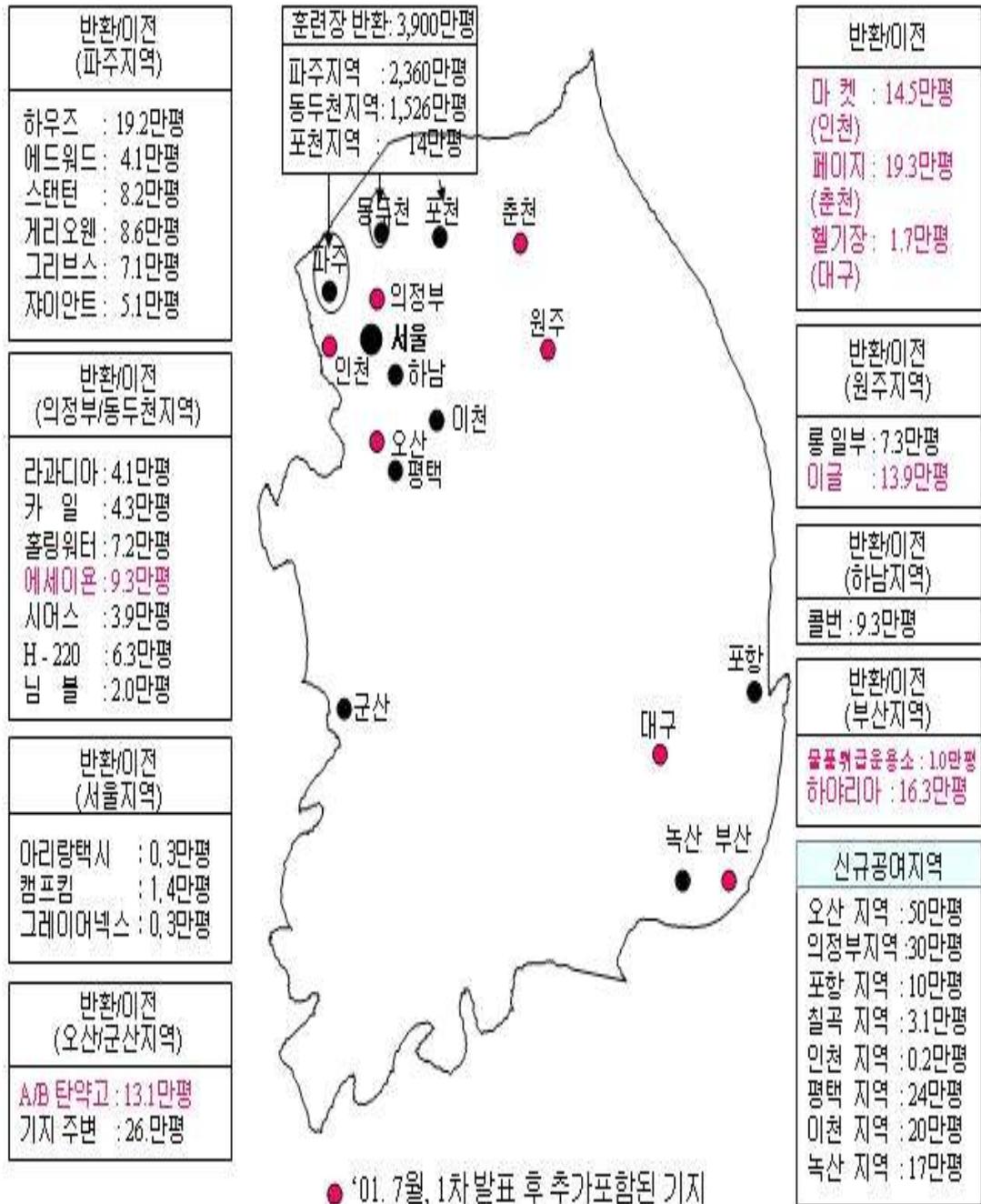
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

미측 반환(기지/시설 : 28개소 214만평 훈련장 : 3개지역 3,900만평)					한측 공여(기지/시설 : 7개지역 144만평 훈련장 : 1개지역 10만평)				
지역	소재지	기지명	규모	년도	지역	소재지	지역	규모	공여년도
서울 (3)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0.3만평	2002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주변	50만평	2002-11
	한강로1가	캠프 킴	1.4만평	2005	의정부	고산읍	캠프스탠리	30만평	2003-9
	대방동	캠프그레이	0.3만평	2006	포항	오천읍	무적훈련장	10만평	2003
파주 (6)	조리면	캠프하우스	19.2만평	2006	칠곡	왜관읍	물품취급운용소	3.1만평	2003
	월동면	캠프에드워드	4.1만평	2007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0.2만평	2003
	광탄면	캠프스탠톤	8.2만평	2007	평택	팽성읍	캠프헵프리	24만평	2005
	문산읍	캠프케리온	8.6만평	2008	이천	대월면	항작사지역	20만평	2007
	금내면	캠프그리브스	7.1만평	2011	부산	강서구	녹산	17만평	2008
	문산읍	캠프자이언트	5.1만평	2011					
의정부 (5)	의정부동	캠프라파디아	4.1만평	2006					
	금오동	캠프 카일	4.3만평	2007					
	의정부동	캠프홀링위터	7.2만평	2010					
	금오동	캠프에세이온	9.3만평	2010					
	금오동	캠프시어스	3.9만평	2011					
동두천 (2)	보산동	H-220	6.3만평	2008					
	상패동	캠프 님블	2.0만평	2011					
원주 (2)	태장동	캠프 룡	7.3만평	2011					
	소초면	캠프 이글	13.9만평	2011					
하남	하산곡동	캠프 폴번	9.3만평	2008					
부산 (2)	가야동	물품취급운용소	1.0만평	2005					
	연지동	캠프하리아	16.3만평	2011					
춘천	근화동	캠프페이지	19.3만평	2011					
인천	상곡동	캠프 마켓	14.5만평	2008					
오산	신장동	A/B탄약고	13.1만평	2008					
군산	옥서면	비행장주변	26.0만평	2003					
대구	봉덕동	캠프워커일부	1.7만평	2007					
서울	공항동	우편터미널	0.2만평	2005					
포항	구정리	CNFK	0.3만평	2011					

■ 한측의 이전 요구로 대체시설 제공

<참고자료 3>

반환 및 이전지역 위치도



<참고자료 4>

LPP사업 수입·지출 추계

가. 사업총괄

수입	지출
환수토지 매각 : 15,131억원 • 28개중 21개 기지/시설 매각	부지/대체시설제공 : 14,900억원 • 8개지역 신규 부지 공여 • 훈련장/안전지역권 확보 • 9개지역 대체시설 제공

나. 수입/지출 내역

수입					지출				
지역	기지매각	규모 (만평)	년도	예산 (억원)	지역	부지매수	규모 (만평)	년도	예산 (억원)
계				15,131	계				14,900
파 주 (4)	캠프에드워드	4.1	'07	146	소 계				2,775
	캠프스텐튼	7.0	'07	138	오 산	공군기지주변	50	'02~11	412
	캠프게리오웬	8.6	'08	400	평 택	캠프험프리	24	'05	208
	캠프자이언트	0.5	'11	35	이 천	항작사지역	20	'07	452
의정부 (5)	캠프라과디아	3.8	'06	1,034	의정부	캠프스텐리	2.0	'03	85
	캠프 카일	4.2	'07	532	포 항	무적훈련장	1.0	'03	127
	캠프홀링워터	0.7	'10	390	칠 곡	물품취급운영소	2.5	'03	24
	캠프에세이온	7.0	'10	855	인 천	우편터미널	0.2	'02~11	9
	캠프시어스	3.9	'11	559	부 산	녹산	17	'08	429
동두천 (2)	H-220	4.7	'08	228	훈련장 부지		40		360
	캠프 님블	1.6	'11	281	사유지/안전지역				465
인 천	캠프마켓	9.9	'06	1,933	환경오염조사				204
춘 천	캠프페이지	17.1	'11	2,060	지 역	대체시설	규모	년도	예산
오 산	베타탄약고	2.2	'02	43	소 계				12,125
	알파탄약고	8.0	'7	40	동두천	H-220		'08	551
하 남	캠프 콜번	7.3	'08	175		캠프 님블		'11	1,082
	아리랑택시	0.3	'02	286	의정부	캠프홀링워터		'10	289
서 울 (3)	캠프 킴	1.4	'05	911		교도소이전		'08	1,000
	캠프그레이	0.3	'06	205	인 천	캠프마켓		'08	1,259
	캠프워커일부	1.7	'07	360	서 울	캠프 킴		'05	298
대 구 부 산	캠프하야리아	15.2	'11	4,520	춘 천	캠프페이지		'11	4,250
					부 산	캠프하야리아		'11	3,315
					대 구	워커헬기장		'07	81

<참고자료 5>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2002.5.20현재

구분	계	환매/매각	사용허가	보상	해제반환	질의/요청	기타	기지이전
1998	62	18	8	2	6	-	28	-
1999	67	15	12	11	7	8	11	3
2000	83	12	11	17	12	17	11	3
2001	118	13	16	16	3	24	3	43
2002	52	6	9	16	-	1	4	16

<참고자료 6>

최근 5년간 주요 민원현황

접수일	민원지역	관련기지명	민원내용	추진결과 및 진행상황
'99.4.16	군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주민 이주요구	○ 신하제마을 이주사업 진행중 ○ 기타 마을 준비중
11.11	대구	캠프위커	헬기장 이전	○ SOFA 과제채택 협상중
12. 3	인천	캠프마켓	기지이전	○ SOFA 과제채택 협상중
'00.3.23	서울	용산개리슨	헬기장 이전	○ SOFA 과제채택 협상중
5. 3	파주	다그마훈련장	징발재산 반환 요구	○ 미측 계속사용 토지로서 반환 불가
5.20	왜관	캠프캐틀	기지이전	○ 미측 계속사용 이전 불가
5.24	평택	캠프헵프리	미군전용 철도 폐지요청	○ 미군용 철도로서 폐지 불가함 통보
6.14	평택	오산비행장	미군 구탄약고 반환 요청	○ 미측 계속사용중 ○ 반환시 한국공군에서 사용 예정
7. 3	군산	군산비행장	탄약고인근주민이주 요구	○ 신하제마을 이주사업 진행중
8. 8	군산	군산비행장	탄약고인근 주민이주 요구	○ 신하제마을 이주사업 진행중 ○ 기타마을 준비중
9.26	동두천	짐블스훈련장	징발재산 반환요구	○ 미측에서 계속사용중인 재산으로 반환 불가통보
'01.1.10	대구	캠프위커	헬기장 이전	○ SOFA 과제채택 협상중
3.30	평택	오산비행장	미군 구탄약고 반환 요청	○ 미측 계속사용중 ○ SOFA 과제채택 준비중
접수일	민원지역	관련기지명	민원내용	추진결과 및 진행상황
'01.4.2	대구	캠프위커	헬기장 이전	○ SOFA 과제채택 협상중
6. 1	성남	미군 전기지	기지이전	○ 미측 계속사용 이전 불가
6.13	군산	군산비행장	탄약고인근주민 이주 조속 추진 요구	○ 신하제마을 이주사업 진행중 ○ 토지공사 위탁매수
6.13	군산	군산비행장	탄약고인근주민 이주 요구 및 소음대책	○ 신하제마을 이주사업 진행중 ○ 기타마을 준비중
7. 7	대구	캠프위커	헬기장 이전	○ 연합토지관리계획 설명
7. 9	의정부	캠프스탠리	기지통합을 위한 추가부지 공여불가	○ 연합토지관리계획 설명
'99.2.9	화성	매향리사격장	사격장인근주민 이주요구 청원	○ 예산반영('01년50억) ○ 이주여부 검토중
'00.8.14	파주	스토리사격장	스토리사격장 설치반대	○ '73년 공여지역으로서 사유지 매입중임을 통보 ○ 주민 이해 요청
12. 1	파주	스토리사격장	스토리사격장 설치반대	○ '73년 공여지역으로서 사유지 매입중임을 통보 ○ 관계법령 소개
'01.1.11	파주	스토리사격장	스토리사격장 실농 보상 문의	○ 실경작자 에게 작물별보상 통보 ○ 원소유자 합의필요
6.26	포천	영평훈련장	영평 사격장내 분묘(약 40기) 이장조치 요구	○ 분묘 위치도 및 가계 계보도 통보요청 ○ 미측와 협의중임을 통보

접수일	민원지역	관련기지명	민원내용	추진결과 및 진행상황
'01.7.23	의정부	캠프스텐리	• LPP전면적 공개/통합반대	• 의정부 교도소와 연계한 이전계획 수립
7.21	춘천	캠프페이지	• 캠프페이지가 반드시 반환되길	• LPP계획에 포함 이전합의
7.24	부산	캠프하야리아	• 캠프하야리아가 이전에 포함되길	• LPP계획에 포함 이전합의
7.25	파주	캠프하우스	• 캠프하우스가 포함되는지	• LPP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사용계획
8.3	매항리	전투기사격장	• 매항리가 빠진 이유	• 매항리 사격장은 이전이 불가/대체지역 선정 곤란
8.3	대구	캠프위커	• 캠프위커 이전	• 헬기장 외곽지역 이전 합의
8.14	대구	캠프위커	• 캠프위커 이전 • A-3지역으로 이전반대	• LPP사업에 포함 • 대구 외곽지역으로 이전
8.17	의정부	캠프스텐리	• 부대확장 반대 • 헬기부대이전반대	• 부대확장은 의정부교도소 영농지로 계획 • 헬기부대는 이전 않음
8.18	의정부	캠프스텐리	• 미군기지 이전반대 • 헬기 소음피해	• 캠프 스텐리 확장 불가피 -의정부시내 5개기지 이전 • 소음 최소화 노력
8.24	대구	캠프위커	• 남구 위커 헬기장 동구에 있는 A-3 비행장으로 이전반대	• 위커 헬기장 대구 외곽 지역으로 이전
8.25	서울	극동공병단	• 극동공병단 이전	• 이전비용 과다 요구로 LPP사업에서 제외
9. 5	의정부	캠프스텐리	• 미군기지 이전반대	• 스텐리지역 이전 불가피 • 일부지역조정/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10.12	대구	캠프위커헬기장	• 헬기장이전 대구 외곽지역으로	• LPP사업에서 대구지역으로 이전 합의
10.15	평택	평택시내기지	• 미군부대 확장 반대	• 평택 외곽미군기지 일부 확장 불가피

접수일	민원지역	관련기지명	민원내용	추진결과 및 진행상황
11.21	포항	미해병훈련장	• 미군기지 주둔반대	• 포항지역은 주둔 목적이 아닌 훈련장 사용을 위한 공여
11.22	파주	다그마노스	•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 세부지역의 미군의 유일한 훈련장 • 폐쇄/반환은 불가
12.5	의정부	캠프스텐리	• 미군기지 증설반대	•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 의정부교도소 영농부지 이용 이전계획
12.18	포항	미해병훈련장	• 미군기지주둔공개질의	• 미군기지주둔 목적이 아님 • 유사시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장으로 공여
'02.1.30	대구	캠프위커	• 위커 헬기장 외곽으로 이전	• LPP사업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 합의
3.8	수도권 지역	미군기지	• 용산,부평, 부산, 의정부, 대구, 파주지역 미군기지 이전	• LPP에서 대부분 포함 -용산기지는 별도 논의
3.15	부평	캠프마켓	• 부평기지에 대한 입장	• 부평 캠프마켓은 LPP 이전 사업으로 합의
3.30	의정부	캠프스텐리	• 통합불가 • 의정부 미군기지 다른지역으로 이전	• 의정부 시내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통합 불가피 • 지자체 피해 최소화
4.10	이천	캠프페이지	• 이천지역에 미군기지이전이 확정되었는지	• 이천지역으로 캠프페이지 이전 확정 -사전 협의하지 못한 점은 시간 촉박
4.16	울릉도	무인송신탑	• 미군기지 절대 반대	• 미군기지가 아님-무인 송신 중계소임
4.23	대구	캠프위커	• 이전 협상 반대	• 헬기장은 이전 결정 • 부대작전상 필수적 운용

<참고자료 7>

반환예정지의 소유권별 현황

가. 주요기지 및 시설

지역	기지명	소유권별(평)			
		계	국방부	타부처	사유지
계		2,143,300	1,470,000	269,100	404,200
서울	아리랑택시	3,300	3,300	-	-
	캠프 킴	14,000	14,000	-	-
	캠프 그레이	3,000	3,000	-	-
파주	캠프 하우스	192,000	134,000	44,000	14,000
	캠프 에드워드	41,000	41,000	-	-
	캠프 스탠튼	82,000	73,000	5,000	4,000
	캠프 게리오웬	86,000	86,000		
	캠프 그리브스	71,000	4,000	700	66,300
	캠프 자이언트	51,000	6,000	45,000	-
	의정부	캠프 라파디아	41,000	39,000	1,700
	캠프 카일	43,000	42,000	200	800
	캠프 홀링워터	72,000	6,600	65,000	400
	캠프 에세이온	93,000	70,200	700	22,100
	캠프 시어스	39,000	38,700	-	300
동두천	H-220	63,000	48,300	12,200	2,500
	캠프 님블	20,000	15,600	1,700	2,700
원주	캠프 룡	73,000	70,200	1,000	1,800
	캠프 이글	139,000	139,000	-	-
하남	캠프 콜번	93,000	72,700	3,300	17,000
부산	물품취급운영소	10,000	1,600	8,400	-
	캠프 하야리아	163,000	151,000	12,000	-
춘천	캠프 페이지	193,000	172,000	20,000	1,000
인천	캠프 마켓	145,000	98,800	46,200	-
오산	A/B탄약고	131,000	120,000	-	11,000
군산	비행장주변	260,000	-	-	260,000
대구	캠프 워커일부	17,000	17,000	-	-
김포	우편터미널	2,000	-	2,000	-
포항	CNFK	3,000	3,000	-	-

나. 훈련장

지역	훈련장	소유권별(천평)			
		계	국방부	타부처	사유지
계		39,236	2,668	536	36,032
춘천	페이지	369	-	369	-
	T/S 훈련장	9	5	4	-
동두천	짐볼스	3,613	1,824	74	1,715
	케이지(일부)	587	587	-	-
	호비(일부)	146	146	-	-
파주	켄사스사격장	86	8	15	63
	오클라호마	18	18	-	-
	뉴멕시코, 텍사스 줄루(일부)	1,243	41	49	1153
	에모빌TA-B 외6	1,593	-	-	1,593
	켄사스LTA 외6	20,497	7	15	20,475
	도하장	19	11	4	4
	양주	모빌	10,918	21	-
포천	로드리게스(바이오넷)	138	-	6	132

<참고자료 8>

반환예정지의 매도예정가와 대체시설 소요 (단위 : 억원)

반환구역	매도금액	대체시설경비	소요일정	대체시설
아리랑 택시	286		2002년	불요
캠프 킷	911	298	2005년	한국
그레이어넥스	205		2006년	미국
라과디아	1,034		2006년(주3)	미국
시어스	559		2011년	미국
에드워드	146		2007년(주2)	미국
카 일	532		2007년	미국
콜 번	175		2008년	미국
H-220	228	551	2008년	한국
홀링워터	390	289	2010년	한국
하야리아	4,520	3,744	2011년	한국
자이언트	35		2011년(주1)	미국
스텐톤	138		2007년	미국
넘블	281	1,082	2011년(주1)	한국
게리오웬	400		2008년(주1)	미국
마켓	1,933	1,259	2008년	한국
페이지	2,060	4,702	2011년	한국
에세온	855		2010년	미국
H-805(캠프워커)	360	81	2007년	한국
오산 베타	43		2002년 10월	불요
오산 알파	40		2008년	미국
합계	15,131			

<참고자료 9>

안전지역권 설정계획 현황

지역/기지	설정된 지역	면적
오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13만평
군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	9.5만평
	주요포대주변	미정
평택 캠프 험프리	재무장지역	1.2만평
동두천 캠프 케이시	탄약저장소	9.8만평
동두천 캠프 호비	탄약저장소	미정
의정부 캠프 스텐리	탄약저장소	5.5만평
대구 캠프 워커	탄약저장소	6만평

※ 정확한 면적은 향후 한·미 합동 실사 후 확정

<참고자료 10>

한국측 LPP 기본계획안(2001.2.2)

지역	기지명	범위(평)	통합이유	통합지역
서울	캠프 킴	14,000	• 활용도 저조 • 도심발전필요	용산기지
	서빙고 주둔지	1,523		
부산	캠프 하야리아	전체(163,100)	도심지역 균형발전	부산시와 추후협의
대구	캠프 워커	일부(25,600)	• 공여목적 상실 • 도심발전 저해 • 소음으로 민원	대구시와 추후협의
인천	캠프 마켓	전체(145,000)	• 지역주민숙원사업 • 도심 균형 발전 • 공여지 비효율적 사용	인천시와 추후협의
춘천	캠프 페이지	전체(573,000)	• 도심 균형 발전 • 소음으로 민원	춘천시와 추후협의
의정부	캠프 잭슨훈련장	전체(526,100)	• 도심 균형 발전 • 미사용 훈련장	의정부시와 추후협의
동두천	H-220 헬기장	전체(6,300)	• 공여 목적 외 사용 • 도심 균형 발전	없음
평택	캠프 험프리(기지내 채석장)	일부(39,200)	• 장기 미사용	없음
오산	오산비행장(구탄약고)	일부(22,000)	• 탄약고 이전 완료 • 도심 균형 발전	없음
군산	비행장(활주로인근)	일부(520,000)	• 주민생활/재산권행사 제한	없음
기타	영평훈련장	일부(336,900)	• 미사용 훈련장	캠프 룡/험프리로 통합
	원주 캠프룡	전체(70,127)	• 활용도 저조	

※ 상기 기지 중 음영으로 처리한 4곳은 공여목적 상실 또는 미사용(목적외 사용 포함)에 해당됨.

※ 우리측의 반환요구 지역 가운데, 서울의 서빙고 주둔지 및 캠프 험프리내 채석장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참고자료 11>

미국측의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 내용(2000.11.28)

가. 한국측에게 반환 가능한 기지 : 932,200평

(문산) 하우스	181,200평	(의정부) 시어즈	39,200평
(문산) 에드워즈	41,600평	(의정부) 카일	84,500평
(문산) 게리 오웬	162,700평	(의정부) 라구아디아	41,600평
(문산) 스탠턴	80,800평	(의정부) 휠링 워터	14,700평
(문산) 자이언트	29,400평		
(문산) 그리브스	72,200평		
(하남) 콜번	75,900평		
(서울) 그레이	2,400평		
(서울) FED 콤파운드	13,500평		
(서울) 김포 공항	2,100평		
(동두천) 님블	17,100평		
(원주) 룡	73,400평		

나. 필요한 토지 획득 : 750,600평

(평택)	협프리즈	171,400평
(의정부)	스탠리	208,100평
(의정부)	레드 클라우드	24,500평
(송탄)	오산공군기지	238,700평
(포항)	주한미군사령부 포항파견대	1,800평
(포항)	포항 훈련장	104,000평
(인천)	인천 공항	2,100평
(군산)	군산공군기지	1,300,000평(현재 존재하지 않는 간척지임)

<참고자료 12>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 일지

- '00. 3. 30 : 주한미군 부사령관(미측SOFA합동위원장)의 개념 및 계획설명
- '00. 5. 1 : 우리정부, 원칙적 동의의사 전달 (외교통상부 → 주한미대사관)
- '00. 11. 18 : 미측, LPP구체안 제시 (17개기지 반환 및 3,310억원 지원요구)
- '01. 2. 1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132차상임위 보고 (LPP추진이 양국 공히 이익임을 공공 인식)
- '01. 11. 15 : 한·미 국방장관간 의향서 제출
- '02. 3. 2 : 국무조정실 보고
- '02. 3. 12 : 제182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
- '02. 3. 26 : 국무회의 협정안 의결
- '02. 3. 28 : 대통령 보고 및 재가
- '02. 3. 29 : 협정서 서명

<참고자료 13>

반환 기지 및 시설(부속서 1)의 이전 예정지역

가. 전부반환

반환하는 기지	반환년도	이전지역
택시 에넥스	2002년	용산
캠프 킴	2005년	"
캠프 라파디아	2006년	캠프스탠리
부산 DRMO	2005년 6월	칠곡연화
김포 우편 시설	2005년	인천국제공항
캠프 하우스	2006년	캠프케이시
캠프 스탠턴	2007년	캠프스탠리
캠프 에드워드	2007년	"
캠프 게리 오웬	2008년	"
캠프 콜번	2008년	캠프험프리
캠프 이글	2011년	"
캠프 그레이	2006년	용산
H220	2008년	캠프스탠리
캠프 하야리아	2011년	부산녹산
캠프 에세온	2010년	스탠리
캠프 힐링 워터	2010년	"
캠프 카일	2007년	"
캠프 마켈	2008년	캠프험프리/용산
캠프 시어즈	2011년	캠프스탠리
캠프 자이언트	2011년	"
캠프 그리브스	2011년	"
캠프 님블	2011년	캠프케이시
캠프 페이지	2011년	이천공작사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 파견대	2011년	포항훈련장

나. 일부 반환

위 치	반환년도	이전지역
오산공군기지 (베타 사우스)	2002년 10월	불필요
캠프 워커 (H-805)	2007년	분산
오산공군기지 (알파 사이트)	2008년	오산기지주변
캠프 룡	2011년	캠프험프리

<참고자료 14>

매향리사격장 · 다그마노스훈련장 · 스토리사격장 민원내용

구 분	위 치	공역면적	용도	민원내용
매향리 사격장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53만평	미7공군 비행사격 훈련장	· 매향1· 5리 주민 이주
다그마노스 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170만평	미2사단 전차훈련장	· 사격장 폐쇄 · 훈련장진출입 금지 · 소음/진동
스토리 사격장	경기도 파주(4개리) 연천(1개리)	215만평	미2사단 종합사격장	· 사격장 폐쇄 · 영농보장